

2018년 지역인재(8급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지역인재 8급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12.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수습직원 4명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군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계		4명	
8급	행정직군	1명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술직군	1명	
9급	행정직군	1명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술직군	1명	

2. 선발개요

- ①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대학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천
- ②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 선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함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의 졸업자(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학위취득이 안될 경우 합격취소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단, 2년제 대학인 경우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함

③ **학과성적**

-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함

④ 외국어능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텡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대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하여야 한다.(유효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어학 능력성적표의 유효기한은 어학능력 시험일부 2년으로 한다)

- 어학능력점수는 2016. 4. 20. 이후 시행한 시험에 한해 적용되며,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당해 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면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도 인정됨(단,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⑤ **응시가능연령**: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3) 추천방법

가. 대학별 자체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발

- 자체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 추천 시 준수사항
 -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
 -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추천하되, 전공계열로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직급표에 따라 임용예정직렬이 속한 직군으로 추천
 - ※ 행정직군: 인문사회계열, 세무계열, 전산계열, 사회복지계열 등
기술직군: 이공계열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간 남·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천하되 기술직군 추천인원이 반드시 50%이상이어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나. 추천권자: 추천대학의 총장(학장)

다. 추천인원: 대학별 20명 이내

라.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응시자 본인이 접수기간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방법은 5번 항목 참조)

(4) 추천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3. 13.(화) ~ 3. 15.(목) 09:00~18:00

-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자(2018. 3. 15. 18:00) 도착 분까지만 접수함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사담당(우63122)

나. 제출서류

- 2018년 지역인재(수습직원)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통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입증서류(재학(재학)증명서 등)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통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각 1통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자)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학교 추천	원서접수	원서접수 취소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3.13(화) ~ 3.15(목)	3.28(수) ~ 3.30(금)	3.28(수) ~ 4.3(화)	필기시험	4.13(금)	4.21(토)	5.10(목)
			면접시험	5.10(목)	5.17(목)	5.23(수)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

(2) 시험단계

구 분	1차, 2차 시험	3차 시험
전 직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일정상 1차 및 2차 시험 합격자는 동시에 발표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발표)

※ 필기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선발할 예정임. 다만,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동점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가.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사회
 - ※ 사회과목 출제범위 :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 ※ 과목당 20문항, 객관식형, 100점 만점
 - ※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시험시간: 60분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과 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

나. 접수기간: 2018. 3. 28(화) ~ 3. 30(금)

다.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22-0660)

라. 응시수수료: 5,000원

-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
-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가능

마.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군 및 직급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 (응시직군은 추천서에 기재된 응시직군으로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학력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수습직원의 대우

-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고유의 업무를 부여받아 1년간 수습근무를 수행한 후 수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 ※ 임용직렬(직류)은 전공과 가장 가까운 직렬로 별도 결정
 - ※ 간호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보건직렬로 임용
- 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지역인재선발채용운영 규정에 의거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 ※ 수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

7. 기타사항

- 공직부적격자의 사전검증을 위한 면접이 강화되었으며, 지원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면접성적불량자는 불합격처리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 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당해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추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5일전 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710-6213, 6216, 6217, 6243)로 문의 바람